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0003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강영태

피고1. 유한회사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선영

변론 종결2020. 4. 21.

판결 선고2020. 5. 26.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64,330원 및 그 중 77,828,420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4. 7.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8.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38,631,821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38,631,8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유한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주문 제1, 4, 5항과 같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8. 8.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41,000,00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6. 5. 피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E, 보증원금 9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5. 6. 5.(차후 2019. 5. 31.로 변경)"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지급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6. 9. 소외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9. 4.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은행이 2018. 10. 1.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 27. 소외 은행에게 77,828,420원(원금 76,500,000원 + 이자 1,328,4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이 135,910원이다.

다.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1) 피고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2018. 8. 2. 매매대금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8.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F 주식회사(G으로 상호가 변경됨), 채권최고액 15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위 처분행위 이후인 2018. 9. 11.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는 130,368,179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169,000,000원이다.

라.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는 위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77,828,420원, F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30,368,179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150,772,921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으로서는 당시 시세가 179,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F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금으로 77,964,330원(대위변제금 77,828,420원 + 법적절차비용 135,910원) 및 그 중 77,828,4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4.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날 무렵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8. 12. 27. 원고의 대위변제금 지급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피고 B의 사해의사 피고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로하여 주어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처분행위의 시점과 피고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D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시세는 179,000,000원인데 그보다 20,000,000원 정도 낮은 16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8. 8. 2. 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 B는 2008.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J건물 K호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 D도 같은 J건물 L호에 거주하여 서로 아는 사이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매매하면서도 매도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피고 B로 하여금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도록 하는 현상유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나아가 피고 B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48,000,000원을 근저당채무 128,000,000원의 인수 및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의 상계를 통하여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실제로 매매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은 미미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외형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개사무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개료로 수수한 금액도 2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통상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금액이 적으며, 심지어는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D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D가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악의의 추정을 반복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F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바,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169,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130,368,179원이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38,631,821원(169,000,000 - 130,368,179)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이 77,964,330원이다.

5)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담보가액인 38,631,8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8,631,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별지